

## 청운학원정관시행세칙

1979. 01. 01 최초제정  
 1981. 12. 12 부분개정  
 1983. 03. 01 부분개정  
 1991. 08. 29 부분개정  
 2008. 03. 31 부분개정  
 2009. 08. 14 부분개정  
 2011. 08. 18 부분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청운학원(이하“법인”이라한다)정관 제94조에 근거하여 법인(이하 대학 및 유치원을 포함한다)에 속한 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률,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시행세칙은 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하며 법률, 정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일부삭제>

②임시직원, 별정직 교원도 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원1인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무를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익한 직위의 직군을 말하며 임용자격 시험, 보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강임이라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직이라 함은 직군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업무의 변경을 말한다.

### 제2장 교직원의 구분

**제4조(교원)** 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과 조교를 말한다. 단 분류가 곤란한 교원의 별정직은 외래강사를 준용한다.

**제5조(사무직원)** 사무직원이라 함은 일반행정직원(이하 별정직원을 포함 한다), 기술직원, 기능직원, 계약직원, 임시직원을 말한다.

### 제3장 직제와 보직관리

**제6조(운영규정)**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직제와 보직에 관한규정을 두며,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하 대학의 장에 한한다)이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4장 임면·승진·인사일반

### 제1절 신규임용

**제7조(임용의 원칙)**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자격,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 등으로 전형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업무의 곤란성 직무상 비밀의 보장이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원에 한하여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임용의 방법)** ①교직원의 신규 임용(결원보충을 포함한다)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보사 또는 대학의 전산망(홈페이지)에 실시 7일전 1회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9조(전형방법)** 임용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하 대학의 장에 한한다)이 훈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이 세칙에 의하여 임용이 결정된 자는 임용 10일 범위 내에서 다음의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1. 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준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한다.
2.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단 임시직원은 시기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시보임용)** ①이 세칙에 의하여 임용이 결정된 사무직원에 한하여 업무처리 능력, 인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시보기간을 둔다.

②다만 유시경력이 있고 업무의 처리능력, 인성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시보기간을 면제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평등의 원칙 및 별칙)** ①경쟁에 의한 전형은 평등하여야 한다.

②응시자가 부정으로 응시하여 임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응시전체를 취소하고 법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한다.

③교직원이 채점, 청탁 등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견 되었을 시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의2(면직)** ①면직은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명예퇴직, 계약기간만료, 기타 사유에 의한 면직 등으로 구분한다.

②면직은 정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임용령 등을 준용한다. 단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정)**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의장(이하 대학의장에 한한다)이 훈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승진임용

**제14조(승진 임용의 구분)** 승진 임용의 구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제15조(승진 임용의 방법)** ①정기승진 임용은 경력, 근무성적, 인성 등으로 시행한다.

②특별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의장 으로 부터 업무처리 능력이 있고 인성 등이 인정된 자
2. 정년퇴직이 3년 이하인 자
3. 제25조 제1항에 관련된 자

**제16조(평정의 준용)** 정기승진 시 평정 기준은 공무원 평정기준을 준용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법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훈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의 시기)** 이 세칙에 의하여 승진이 결정된 자의 승진 시기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원 : 교원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함
2. 사무직원 : 년 1회이상 시행
3. 특별승진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일

**제18조(전보)** 업무의 처리능력 장기침체 등 법인 내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보 발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직)** 법인 내 직제개편, 예산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격, 업무의 처리능력,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직 시킬 수 있으며, 전직 시 강임 발령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제20조(겸임)** 법인 내에서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그 직을 겸임 시킬 수 있다.

**제21조(파견근무)** 행정의 원만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 내 조직간 직원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년의 시기)** ①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23조(운영규정)** 이 세칙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하 대학의 장에 한한다.)이 훈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능력

**제24조(교육훈련)** 교직원 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연수 등, 응용능력을 위하여 국가,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연수 등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제안제도)** 본 법인의 행정 운영상 능률화 경제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직원 창안제도 의견 등을 조리 있게 계발하여 행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안 제도에 채택되어 법인 내 행정개선, 예산절약 등 이바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승진 임용하여 사기를 진작한다.
2. 제안제도에 따른 시기, 안건, 주체, 선발계획 등은 학보사에 공고한다.

- 제26조(상훈제도) ①교직원으로서 직무에 탁월 하거나 사회 및 법인 내 지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공적패를 수여 할 수 있다.
- ②본조의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27조(교원의 별정직) ①법인 운영상 필요에 따라 비상근 명예교원, 객원교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일부삭제>
- ②교원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관리는 교무처장이 관장한다.
- 제28조(인사기록 관리) 교직에 대한 인사기록은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고 사무직원의 경우는 공무원인사기록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29조(증명발급 위임)대학(유치원장은 제외한다.)에서 발행되어야 할 성격의 인사행정 과학사행정의 증명은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한다.
- 제30조(재직중인 고용직원에 대한 정년경과조치) 재직 중인 고용직 직원에 대한 정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1조(법인직원의 보수체계) 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보수는 대학기성회에서 지급 하는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학보수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규정사항의 발생시 준용)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기1979. 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2. 12 부분 개정)

①(시행일) 본 세칙은 서기1981. 10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03. 01 부분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3.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08. 29 부분 개정)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991.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